



의안번호	제82호
-------------	-------------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서원 의원 외 4 명
발의연월일	2019. 6. 13.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82호
----------	------

발의연월일 : 2019. 6. 13.

대표발의자 : 서 원

공동발의자 : 박승용 조배식
박영자 조용훈

1. 제안이유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무형문화재 적용대상,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보존·전승 활동
(안 제3조~제5조)

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보조금 지원(안 제6조~제7조)

라.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
위원회 운영 및 위원 관련 사항(안 제8조~제13조)

마.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안 제14조)

바. 준용 규정(안 제15조)

사. 시행규칙(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제26조, 제35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6. 14 . ~ 6. 19.(6일간)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하며, 전승자와 이수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6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인정되거나 이수증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단, 전승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경비
3.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제8조(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제5조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향토문화유적 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대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무형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문화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논산시의회 의원	서원 의원 외 4명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 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규정) 시·도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본다.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유단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도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조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수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승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명예보유자”란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제20조에 따른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의 실기능력
2. 해당 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한 이해 정도

④ 도지사는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